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23 호  
2017년2월3일(금)

여 수 시 보

시 정 방 침

- 1. 함께하는 소통시정
- 1. 활력있는 지역경제
- 1. 수준높은 교육복지
- 1. 앞서가는 해양관광
-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7-35호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7-247호 2017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시공업체 공모 /12
- 여수시 공고 제2017-271호 여수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공람공고 /23
- 여수시 공고 제2017-272호 공시송달공고(광림 취약지구 주민생활 도로공사) /29
- 여수시 공고 제2017-276호 도로지정 공고 /31
- 여수시 공고 제2017-278호 어업면허 처분 공고 /32
- 여수시 공고 제2017-279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고 /33
- 여수시 쌍봉동 공고 제2017-15호 쌍봉동 통장(2통) 모집공고 /34

회 관								
--------	--	--	--	--	--	--	--	--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공 고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6.

## 여 수 시 장

###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취지

- 신월동 공영차고지 내 자동차내압용기검사장 설치 운영 등을 위한 사용허가 범위 확대
- 상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저촉되는 일부 조항 개정 및 삭제

#### 2. 주요내용

-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범위 확대(안 제4조제1항)
  - 천연가스 버스 등의 충전을 위한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한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을 설치한 자)
  -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 상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저촉되는 일부 조항 개정 및 삭제
  - 조항 개정 : 제3조, 제4조, 제5조,
  - 조항 삭제 :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입법예고 기간 : 2017. 2. 6. ~ 2. 27.(21일간)

### 5.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참고 : 교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메일(jh2118@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 제출 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 의견 제출할 곳

- 가. 주소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나. 받는 사람 : 여수시장(참고 : 교통과장)
- 다. 전화번호 : 061)659-4155, 팩스 061)659-5837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설치하고 이를 운영·관리한다”를 “설치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반”을 “일반”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천연가스 버스 등의 충전을 위한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한 자(「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을 설치한 자)

4.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제4조제2항 중 “전라남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로, “사용허가”를 “제1항의 사용허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로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일정기간 납기”를 “납기”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여수시에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시내버스 및 택시를 정류시키기 위한 차고지와 그 시설을 말한다.</p> <p>2. “사용자”란 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를 허가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p>	<p>&lt;삭 제&gt;</p>
<p>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대중교통 등 이용에 대한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관리한다.</p> <p>② (생략)</p>	<p>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설치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p>	<p>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 --.</p> <p>1. (현행과 같음)</p> <p>2. ----- 일반 -----</p>

의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로 구성된 대표 단체

<신 설>

<신 설>

② 시장은 여수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중 공동배차제 시행시 구성된 공동관리위원회와 전라남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여수시지부에 우선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 한다.

②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로 한다.

-----  
----

3. 천연가스 버스 등의 충전을 위한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한 자(「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을 설치한 자)

4.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②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 제1항의 사용허가를 --.

<삭 제>

제5조(사용료) <삭 제>

②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를 준용한다.

<삭 제>

④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다.

<삭 제>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⑥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일정기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⑥ -----  
-----  
-- 납기-----  
-----.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거나 원상복구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한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삭 제>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버스 및 일반·개인 택시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환경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공영차고지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

<삭 제>

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 공 고 문

2017년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시공업체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업체에서는 2017. 2. 17.(금) 18:00 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여수시 특산품육성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3일

# 여 수 시 장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시공업체 공모계획

I. 사업명 : 2017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 II. 사업개요

### 1. 추진목적

- 보조사업자와 자격미달 시공업체간 계약으로 야기되고 있는 부실시공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하고 우수한 업체 선정
-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산정하여 반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수혜 농가를 확대하고자 함.

### 2. 추진방침

- 전문 자격을 가진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시공업체를 엄선한후 농가 자율계약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지침에서 정한 설치기준 준수 및 모든 자재의 KS 규격품 사용 의무화
  - ※ 정산시 반드시 품질인증서 첨부 - 외관철판, 냉동기, 유니트쿨러, 증발기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3. ~ 6. 30.(예산 신속집행)
  - \* 시공업체 선정 공모기간 : [2016. 2. 3. ~ 2. 17.\(15일간\)](#)
- 사업량 : 13동(9.9m<sup>2</sup>형 기준) / 1동당 6,000천원
  - \* 본예산 편성 13동은 우선 배정하고, 추경계상후 대상자 추가 선정
- 사업비 : 78백만원(보조 39, 자담 39)

#### 4. 설치기준

- 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되, 아래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 〈 설 치 기 준 〉

- 외관철판 : 0.45mm이상(양면 합산 0.9mm이상)
- 벽 두께 : 100mm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사용
- 냉동기(압축기, 응축기, 팽창변 등) : 3평형(2마력), 5평형(3마력), 10평형(5마력)
- 유니트쿨러(증발기 제상용) : 1대
- 증발기(제상용) : 1대
- 기타 부속장비(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정지 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시 지붕은 지역여건을 감안 가급적 비가림 시설 설치  
※ 단) 저장품목에 따라 기계류용량등은 조정하여 설치 가능

### Ⅲ. 시공업체 선정

#### 1. 선정방식

-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업체를 공모 후 서류심사를 거쳐 공장등록여부, 자격증 소지자 근무여부, KS 제품 및 규격자재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고, 여건에 따라 업체 현장 방문실시후 시공업체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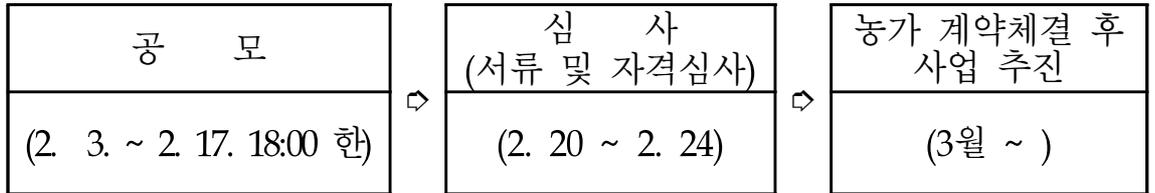
#### 2. 참가자격

-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
  -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종목 : 냉동, 냉장취급)을 필하고, 소형 저온저장고 시공업체로 공장등록한 업체
  - ▶ 냉동기계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을 갖춘 업체
  - ▶ 최근 2년 이내 저온저장고 시공실적이 양호한 업체
  - ▶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 보유업체로 KS제품 사용업체
  - ▶ 성실시공 및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 규모화된 업체
  - ▶ 공고일 현재 여수시로 사업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

※ 참여제한

- 냉동기계기능사 2급이상 기술자격증 미보유 업체
- 각종 제세를 체납한 업체
- 최근 2년간 저온저장고사업 관련 업체의 사유로 민원이 발생한 업체
- 업체선정후 제한 요건사항 발생시에도 참여 제한할 방침임.

### 3.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발주처(대상농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4. 제안심사

-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심사

### 5. 업체선정 : 서류심사를 거쳐, 공장등록여부, 자격증 소지자 근무여부, KS 제품 및 규격자재 사용여부 등을 고려 가장 적합한 업체 직접 선정(3 ~ 4개업체)

- 단, 응모업체가 1개업체 및 부적격업체일 경우 재공모  
※ 업체 선정 개소수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 기타사항

-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 하였거나, 허위자료로 판명 되었을 시시공업체 로 선정되었더라도 해당업체는 시공업체 자격박탈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을 따른다.
- 신청(제안)서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IV. 구비서류 제출

### 1. 제출서류 : 각 1부씩

- ① 시공업체 공모신청서 - (붙임1)
  - ▶ 소형 저온저장고 시공 실적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
- ② 가격 제안서 - (붙임 2) : 판넬형, 컨테이너형 각각 제출
  -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지침(붙임3)의 설치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재를 적용한 가격 제안서
- ③ 시공업체 공장등록증 사본
- ④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 사본
- ⑤ 품질인증서 (KS 등)
  - 판넬(컨테이너), 송풍기, 냉동기 각각 제출
- ⑥ 냉동 기계사·기능사 자격증 사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4대보험 납입 증명서 사본)
- ⑦ 회사 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원
  - ▶ 세무서 발행 - 매출액 확인이 가능하도록
- ⑧ 자재 사용 계획서 - (붙임 3)
- ⑨ 여수시 관내 시공실적(최근 2년) - (붙임 4)
  - ▶ 개인별 설치현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 ⑩ 회사 규모, 종업원 수 등 현황
  - 단순 설치 시공만 하는 업체 제외(부실시공 방지)
- ⑪ 기타 사항 : 시공 제품특성(우수성), 기계설비면허 등 타업체와의 차별성 등 자료

### 2. 서류제출

- 제출기한 : 2017. 2. 17.(금) 18:00한
- 제출방법 : 인편 또는 우편(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 농산물유통팀  
우)59633, 전남 여수시 주동 1길 32(주삼동)

### 3.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 농산물유통팀(659-4515)으로 문의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구 분		33m <sup>2</sup> 형		16.5m <sup>2</sup> 형		10m <sup>2</sup> 형 (높이 2.4m)	비 고
		높이 2.4m	높이 4m	높이 2.4m	높이 3m		
냉 동 기	압축기 냉각능력 (kcal/hr)	9,350 이상	17,653 이상	4,540 이상	6,078 이상	2,540 이상	- 증발온도: -10℃ 기준 - 응축온도: 45℃ 기준 (공냉식)
	응축기 열교환능력 (kcal/hr)	9,350 (TD5℃) 이상	17,653 (TD5℃) 이상	4,540 (TD5℃) 이상	6,078 (TD5℃) 이상	2,540 (TD5℃) 이상	- 실내온도: 0℃ 기준 - TD 5℃ 기준
	유닛쿨러 냉각능력 (kcal/hr)	고습 도용 (TD 5℃)	9,350 이상	17,653 이상	4,540 이상	6,078 이상	2,540 이상
저습 도용 (TD 10℃)		4,675 이상	8,683 이상	2,270 이상	3,039 이상	1,270 이상	
단열 판넬	외 피	- 녹이 슬지 않고, 외부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					
	단열재	- 재질 : 냉동용 우레탄폼 - 두께 : 100mm 이상 - 열전도율 : 0.0185kcal/m.hr.℃ 이하					

구 분	33m <sup>2</sup> 형		16.5m <sup>2</sup> 형		10m <sup>2</sup> 형 (높이 2.4m)	비 고
	높이 2.4m	높이 4m	높이 2.4m	높이 3m		
출입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피 및 단열재는 단열판넬과 동일 규격</li> <li>-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li> </ul>					
비가림 시 설	저장고 상부에 비가림 시설 설치					
저장실 압력조절 장치	저장고 압력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압변 설치					
제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도조절 및 표시기 설치</li> <li>- 전원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정지 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제상용 타이머, 냉동기작동 지연타이머, 유닛쿨러 팬 지연타이머 및 각종 릴레이스위치 설치</li> </ul>					
조 명	저장실 내 조명등은 방습형으로 설치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닛쿨러에는 제상장치 및 과열방지장치를 설치함</li> <li>- 냉동기 및 시스템 보호를 위해 고저압차단스위치와 유압 저하 보호스 위치를 설치함</li> <li>- 냉동기가 정지하면 펌프다운이 되게 함</li> <li>- 응축기는 냉매 압력에 따라 냉각팬이 자동제어 되도록 함</li> </ul>					



##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9.9㎡형)
주 관 기 관	전라남도 여수시
제 안 금 액	일금 <span style="float: right;">원 (₩ )</span>

구 분	금 액	비고
냉동기, 송풍기 증발기, 설치		
단열·판넬 설치		
출입문		
비가림시설		
기타시설 (전원차단, 온도조절, 컨트롤 박스 포함)		
일반관리비		
이 운		
부가가치세		
<b>총 금 액</b>		

※ 전기 인입공사, 기반정비(콘크리트) 제외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 공정별 금액 산출 근거표

2017년    월    일

○○○업체    직인

여 수 시 장 귀 하

[붙임-3]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자재 사용계획서

## 1. 냉 동 기

구 분	제조사	모델명	마력수	비고
유닛쿨러(실내기)	예) 중앙냉동기(주)		HP	
콘덴서(실외기)				

※ 자재사용 냉동기 카달로그 및 품질인증서 첨부

## 2. 단열판넬

○ 제 조 사 :

※ 단열판넬 시험성적서 및 품질인증서 첨부

## 3. 기타자재 사용계획

○ 비가림시설은 어떤 자재로 사용할 것인지?

○ 기초바닥(콘크리트 제외)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콘트롤 판넬은 어떤 자재를 사용할 것인지 등을 기재

2017년 월 일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 여수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공람공고

여수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여수시 신월동 180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여수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

나. 명 칭 : 여수 신월유원지(2단계)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 24,209m<sup>2</sup>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흥해개발(주) 김재호

나. 주 소 : 여수시 신월동 1804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년월일 : 2017.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나. 준공예정년월일 : 2017. 12. 31.

6.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신월유원지 결정(변경) 총괄조서(변경없음)

1) 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세 부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6	신 월 유원지	신월동 1804대 일원	67,600	-	67,600	전고-178호 '10. 6. 11	

나. 신월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1) 신월유원지 조성계획(세부시설)결정(변경) 총괄조서

구 분	기 정		증 감	변 경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67,600.0	100.0	-	67,600.0	100.0
휴 양 시 설	12,258.1	18.1	증) 7,158.9	19,417.0	28.7
호텔 동	12,258.1	18.1	증) 4,252.9	16,511.0	24.4
풀 빌 라 동	-	-	증) 2,906.0	2,906.0	4.3
관 리 시 설	14,734.0 (3,831.5)	21.8 (5.7)	감) 1,616.0	13,118.0 (5,397.0)	19.5 (8.0)
도 로	9,542.0 (1,331.5)	14.1 (2.0)	감) 2,194.0	7,348.0 (2,626.0)	10.9 (3.9)
보행자도로	3,055.0 (990)	4.5 (1.5)	증) 458.0	3,513.0 (1,236.0)	5.2 (1.8)
주 차 장	2,137.0 (1,510)	3.2 (2.2)	증) 120.0	2,257.0 (1,535.0)	3.4 (2.3)
특 수 시 설	12,312.0	18.2	감) 1,043.0	11,269.0	16.6
전통결혼식장	3,829.0	5.7	감) 1,043.0	2,786.0	4.1
온 실	906.0	1.3	-	906.0	1.3
해양식물원	6,332.0	9.4	-	6,332.0	9.4
광 장	1,245.0	1.8	-	1,245.0	1.8
편 의 시 설	1,914.0	2.8	감) 1,914.0	-	-
카페테리아	1,914.0	2.8	감) 1,914.0	-	-
녹 지	26,381.9 (814)	39.1 (1.2)	감) 2,585.9	23,796.0 (1,963.0)	35.2 (2.9)

※ ( ) : 휴양시설과 중복

2) 시설별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변설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축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면적	기정		-	67,600.0	7,906.49	59,348.48		
	변경		-	67,600.0	11,261.78	83,222.78		
시설면적	기정		-	41,218.1	7,906.49	59,348.48	• 건폐율 : 10.89% • 용적률 : 81.78%	
	변경		-	43,804.0	11,261.78	83,222.78	• 건폐율 : 27.35% • 용적률 : 99.91%	
휴양시설	기정	소계		-	12,258.1	7,406.49	58,848.48	
		1-1	호텔(가)동	1804일원	7,160.0	2,308.42	17,969.05	• 지상10층, 지하2층
		1-2	호텔(나)동	1804일원	5,098.1	5,098.07	40,879.43	• 지상6층, 지하3층
	변경	소계		-	19,417.0	11,261.78	83,222.78	
		1-1	호텔(가)동	1804일원	7,160.0	2,308.42	17,969.05	• 지상10층, 지하2층
		1-2	호텔(나)동	1804일원	9,351.0	8,619.00	64,965.77	• 지상12층, 지하5층
관리시설	기정	소계		-	14,734.0			
		2-1	주차장 ①	1804일원	240.0			
		2-2	주차장 ②	1804일원	25.0 (210.0)			• ( ) : 휴양시설내 면적포함
		2-3	주차장 ③	1804일원	140.0			
		2-4	주차장 ④	1804일원	- (1,210.0)			• ( ) : 휴양시설내 면적포함
		2-5	주차장 ⑤	1804일원	- (115.0)			• ( ) : 휴양시설내 면적포함
		2-6	주차장 ⑥	1804일원	765.0			
		2-7	주차장 ⑦	150-5일원	715.0			
		2-8	주차장 ⑧	150-2일원	252.0			
		-	도로	-	9,542.0			
	-	보행자도로	-	3,055.0				
	변경	소계		-	13,118.0			• 감) 1,616.0
		2-1	주차장 ①	1804일원	240.0			
		2-2	주차장 ②	1804일원	25.0 (210.0)			• ( ) : 휴양시설내 면적포함
		2-3	주차장 ③	1804일원	130.0			
		2-4	주차장 ④	1804일원	- (1,210.0)			• ( ) : 휴양시설내 면적포함
		2-5	주차장 ⑤	1804일원	- (115.0)			• ( ) : 휴양시설내 면적포함
		2-6	주차장 ⑥	1804일원	765.0			
		2-7	주차장 ⑦	150-5일원	715.0			
		2-8	주차장 ⑧	150-2일원	252.0			
2-9		주차장 ⑨	1804일원	130.0				
-	도로	-	7,348.0			• 감) 2,194.0		
-	보행자도로	-	3,513.0			• 증) 458.0		
특수시설	기정	소계		-	12,312.0			
		3-1	결혼식장	207-2일원	3,829.0			
		3-2	온실	197-4일원	906.0			
		3-3	해양식물원	196-4일원	6,332.0			
	3-4	광장	205-1일원	1,245.0				
	변경	소계		-	11,269.0			• 감) 1,043.0
		3-1	결혼식장	207-2일원	2,786.0			• 감) 1,043.0
		3-2	온실	197-4일원	906.0			
3-3		해양식물원	196-4일원	6,332.0				
3-4	광장	205-1일원	1,245.0					
편익시설	기정	소계		-	1,914.0	500.00	500.00	
		4-1	카페테리아	201-1일원	1,914.0	500.00	500.00	• 지상1층
	변경	소계		-	-	-	-	• 감) 1.914.0
-		카페테리아	-	-	-	-	• 감) 1.914.0	
녹지	기정	소계		-	26,381.9	-	-	
		-	녹지	-	26,381.9	-	-	
	변경	소계		-	23,796.0	-	-	• 감) 2,585.9
-		녹지	-	23,796.0	-	-	• 감) 2,585.9	

3) 신월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휴양 시설	호텔(나)동	◦ 면적증가 (5,098.1㎡→9,351.0㎡, 증) 4,252.9㎡)	◦ 호텔 증축동 규모 확장에 따른 면적증가
	풀빌라동	◦ 면적증가 (-㎡→2,906.0㎡, 증) 2,906.0㎡)	◦ 숙박시설의 다양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풀빌라동 신설에 따른 면적증가
관리 시설	도 로	◦ 면적감소 (9,542.0㎡→7,348.0㎡, 감) 2,194.0㎡)	◦ 호텔 증축동으로의 접근을 위한 진입도로 추가 확폭 및 증축동과 회전형 통행체계에 도로선형을 변경하여 연결
	보행자도로	◦ 면적증가 (3,055.0㎡→3,513.0㎡, 증) 458.0㎡)	◦ 호텔 증축동 및 진입도로 변경에 따라 기존 내부 보행자도로와 시설간의 순환체계가 구축 되도록 연결
특수 시설	결혼식장	◦ 면적감소 (3,829.0㎡→2,786.0㎡, 감) 1,043.0㎡)	◦ 토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선형 일부 변경으로 인한 면적감소
편익 시설	카페테리아	◦ 면적감소 (1,914.0㎡→-㎡, 감) 1,914.0㎡)	◦ 호텔 증축동 내에 편익시설 확보를 고려하여 카페테리아 폐지
녹지	녹 지	◦ 면적감소 (26,381.9㎡→23,796.0㎡, 감) 2,585.9㎡)	◦ 호텔 증축동 규모확장 및 풀빌라 신설에 따른 녹지면적 감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8. 공람기간 : 2017. 2. 3. ~ 2017. 2. 17.(14일간)

9. 공람장소 : 여수시 도시계획과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1	신월동	192-15	대	145.0	145.0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2	신월동	197-6	전	552.0	143.0	정대운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55, 109동 1301호	
3	신월동	197-7	전	754.0	182.0	한국방송공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4	신월동	197-8	전	1,452.0	627.0	한국방송공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5	신월동	197-10	임	172.0	172.0	전병대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86, 102동 809호	
6	신월동	197-12	전	612.0	612.0	추희숙	전라남도 여수시 도원로 204, 502동 306호	지상권
7	신월동	197-14	대	1,117.0	1,117.0	황미순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728-1	
8	신월동	197-44	전	2,059.0	2,059.0	홍해개발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96-25	
9	신월동	197-46	임	893.0	21.0	허환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253-19	
10	신월동	198-2	임	963.0	963.0	홍해개발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96-25	
11	신월동	198-10	전	4,100.0	3,660.0	홍해개발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96-25	
12	신월동	198-11	임	129.0	129.0	임영만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54-26, 102동 1302호	
13	신월동	199	전	132.0	31.0	김탐진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162	
14	신월동	199-1	전	139.0	136.0	정상성	전라남도 여수시 예올마루로 30, 104동 802호	
15	신월동	200	전	231.0	231.0	최남수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200	
16	신월동	200-3	잡	247.0	247.0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17	신월동	200-6	잡	161.0	161.0	서길모	전라남도 여수시 장성1길 37, 303동	
18	신월동	201	전	192.0	192.0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19	신월동	201-1	전	3,369.0	1,276.0	한국방송공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20	신월동	201-7	전	1,017.0	1,017.0	홍해개발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96-25	
21	신월동	202	답	208.0	208.0	홍해개발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96-25	
22	신월동	202-3	전	129.0	116.0	이명숙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561-8, 7동 1402호	
23	신월동	202-4	전	549.0	456.0	홍해개발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96-25	
24	신월동	202-7	전	162.0	102.0	홍해개발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96-25	
25	신월동	202-8	임	569.0	546.0	김육성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60 금호아파트 8-70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26		202-10	전	162.0	162.0	홍해개발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96-25	
27		202-12	전	188.0	188.0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28		202-15	임	1,557.0	1,557.0	한국방송공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29		202-20	답	13.0	13.0	김현전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561-8, 7동 1402호	
30		202-21	전	40.0	40.0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31		202-22	전	23.0	23.0	김현전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561-8, 7동 1402호	
32		205-1	전	3,337.0	82.0	한국방송공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33		207-2	전	1,229.0	113.0	한국방송공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34		208-2	전	302.0	302.0	여수시	전남 여수시 시청로1(학동)	
35		1804	대	24,141.5	6,842.4	홍해개발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96-25	
36		1804-2	도	337.6	337.6	홍해개발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96-25	
합계					<b>24,209.0</b>			

## 공 시 송 달 공 고

여수시에서 추진 중인 「광림 취락지구 주민생활 도로개설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거소불명, 소유자의 사망, 부재 등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2. 3.

### 여 수 시 장

1. 사업 개요 : 광림 취락지구 주민생활 도로개설사업
2. 위 치 : 여수시 광무동 783-5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4. 공고 기간 : 2017. 2. 3. ~ 2017. 2. 17.(14일간)
5. 공고 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고 내용
  -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 협의장소 : 여수시청 도시재생과 (☎061-659-4553)
  - 보상방법 : 현금보상
    - 위 협의기간 중 미 협의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 보상협의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 초본1부(전주소 포함), 통장사본 1부
    - 지참물 : 인감도장, 지장물소유확인서

## 7. 공시송달 대상

### ○ 토 지

소재지	지번 (편입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여수시 광무동	611-39	대	89	여수시 시청서3길 4*(학동)	
	741-12	도	26	서울시 성남구 분당구 야탑동 330, 장미마을 134동 70*호	
	741-20	도	10	서울시 성남구 분당구 야탑동 330, 장미마을 134동 70*호	

### ○ 지장물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여수시 광무동	611-39	주택	벽돌함석	36.5㎡	여수시 시청서2길 4*(학동)	김*하
		주택	벽돌슬래브	20.5㎡		
		화장실	벽돌함석(1*1.2)	1.2㎡		
		빨래건조대		2식		
		대추나무		1주		
		동백나무		1주		
		장미		1주		
		철쭉		2주		
		담장	벽돌(7.6*1)	1식		
		계단	콘크리트(15단)	1식		
		철제대문		1식		
		화단	벽돌	1식		
		마당	콘크리트	14.98㎡		
		담장	벽돌	1식		

## 8. 기타사항 및 문의처

- 보상협의 요청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도시재생과 (☎061-659-455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2141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m <sup>2</sup>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삼산면 초도리 산 2133 삼산면 초도리 산 2134	35	4	132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061-659-4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2. 3.

여 수 시 장

##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 어업면허 처분 내역 ◆

면허 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적 (ha)	어장 위치	면허기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10385	마을 어업	-	77	소라 사곡	2017.04.10 2027.04.09	-	여수시 소리면 사곡리	사곡 어촌계	10114 재개발
10386	마을 어업	-	32.6	소라 사곡	2017.04.10 2027.04.09	-	여수시 소리면 사곡리	사곡 어촌계	10115 재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17. 2. 03.

# 여 수 시 장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고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한 결과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고 청문에 불참하였기에,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 여 수 시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2.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제37조,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14조
3. 행정처분 내용

업종	업소명	영업주	영업소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의 원인	처분결과
제과점 영업	케이이벤트 (제1994-0506046호)	차☆일	여수시 진남상가길 5-1 (중앙동)	영업장 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장 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소 폐쇄 (2017. 2. 6.)
제과점 영업	빵곰터피자빈 (2001-0506323호)	박☆애	여수시 덕양로 370	영업장 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소 폐쇄 (2017. 2. 6.)
제과점 영업	파스 에 파스 (pas a pas) (2010-0506022호)	박☆중	여수시 학동1길 10 (학동)	영업장 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소 폐쇄 (2017. 2. 6.)
제과점 영업	보리수 (제2010-0506548호)	조☆희	여수시 진남상가길 5-1 (중앙동)	영업장 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소 폐쇄 (2017. 2. 6.)
제과점 영업	원베이커리 (2011-0506065호)	정☆심	여수시 여서로 176, 상가1동 지하층 1호 (여서동, 부영7차)	영업장 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소 폐쇄 (2017. 2. 6.)

4. 공고기간 : 2017. 2. 3 ~ 2017. 2. 21(18일간)
5. 고지사항 : 영업소 폐쇄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 (<http://www.simpan.go.kr>) 으로 우리시 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여수시 식품위생과 (☎ 061-659-4228)

## 통 장 모 집 공 고

쌍봉동 통장 사직에 따라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관할 통장을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통장 : 2통

- 관할구역 : 2통(장미아파트)

2. 공고(접수)기간 : '17. 2. 3. ~ '17. 2. 12. 【9일간】

3. 접수장소 : 쌍봉동주민센터[여수시 흥국로 25(학동)]

4. 신청자격

- 가. 모집공고일 기준 당해 통 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 나.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 다. 해당 통 주민총회에 의해 선출된 자.

5. 신청 제외자

- 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종료되지 아니한 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자

6. 선출방법

- 가.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심사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동장 직권 위촉
- 나.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선임기준안에 의한 심사를 거쳐 동장이 최종 선임

7. 제출서류

- 가. 통장지원신청서 1부, 자필이력서(사진부착) 1부, 자기소개서 1부, 통장추천서 1부
- 나. 기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할 서류(경력에 따라 별도 추가 가점배정)
  - ▶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 경력증명서, 상훈(표창장 등 사본)

8.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내용 허위판명 즉시 통장 임명을 해임합니다.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쌍봉동주민센터 (☎659-1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2. 3.

쌍 봉 동 장



		이 력 서		
사 진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주 소	여수시			
전화번호	휴대폰 :		전 화 :	
호적관계	호주와의 관계			호주명
년 월 일	학 력 사 항			학 교 명
년 월 일	경 력 사 항			기 관 명
년 월 일	포 상 및 형 별 사 항			기 관 명

상기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위 작성자 : (인)

# 자 기 소 개 서

지 원 대 상	여수시 쌍봉동 통
성 명	
주 소	
성 장 과 정 (가족관계)	
성 격 (장 · 단점)	
통 장 지 원 동 기	
경 력 사 항	

작성자 : (인)

# 통 장 추 천 서

## □ 추천대상자

- 추천직위 : 쌍봉동 제 통장
- 성 명 :
- 주 소 : 여수시

상기자는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하여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으로 쌍봉동 제 통장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 통장 추천(동의)인 명부 1부.

2017년 월 일

쌍봉동 제 통장 추천(동의)인 일동

여수시 쌍봉동장 귀하

## 쌍봉동 제 통장 추천(동의)인 명부

연번	주 소	성 명	서명(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쌍봉동 제 통장 추천(동의)인 명부

연번	주 소	성 명	서명(인)	비 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